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우리 구에서는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마을자치분야에 지원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11일

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 인원 : 1명

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자치행정과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총괄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활성화 기획 및 운영 · 민관협력 및 대외연계사업 추진

○ 채용 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및 업무수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 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지역·연령·성별 : 만 20세 이상인 자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등급	자격기준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
- ※ 실무경력 : 위 분야 관련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또는 민간부문(법인, 단체)의 근무경력, 활동경력 등 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
- ※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직무분야에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보수 및 수당

- 연봉

임용등급	연봉액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53,974천원

- 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시간외 수당,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5. 선발일정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23.(화) ~ 8. 25.(목) <3일간 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 우편접수 (대리접수 가능, 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 동봉
- 접 수 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본관 5층)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서류전형	2022. 9. 1.(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9. 2.(금) 예정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2. 9. 8.(목) 예정	추후 개별 안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2. 9. 13.(화) 예정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3항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다만, 필요한 경우 평정요소 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
- ※ 단,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첨부1) 1부

- 응시수수료 : 가급 - 10,000원

※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접수처(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에 제출

※ 수입증지 판매처 :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인증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② 이력서(첨부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첨부3)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1부

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첨부5) 1부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6)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또는 사본)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7)'추가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단,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또는 서류전형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www.sdm.go.kr) '고시공고' 와 '채용정보'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 02-330-1273)